

입찰 유 의 서

1. 사용허가대상 시설물 :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상가

재 산 의 소 재 지	물건	호수	사용허가 면적	예 정 가 격 (1년간)	주 용 도
동해시 동해대로 5443	건물	106호	48m ²	1,913,580원	근린생활시설 (일반사무실)

※ 입찰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

2. 소 재 지 : 동해시 동해대로 5443

3. 현장 설명 :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**표시재산의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**

※ 입찰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며, 사용허가 후 입주 가능(**상하수도시설 없음**)

4. 사용인의 의무 : 사용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가. 허가시설 및 부대시설의 선량한 관리책임

나.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

다. 기타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제반사항의 준수사항

5. 사용인의 부담 : 다음사항은 사용인이 부담한다.

가. 사용허가 시설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및 쓰레기종량제사용봉투대금

나.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허가시설물 (부대시설 포함)이 파손 훼손, 분실되었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

다. 허가시설 내에 발생하는 제반사고의 민.형사상의 책임

라. 임대시설물 내.외부 인테리어 등 설비의 장식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,
임대사용 기간 종료시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마. 임대시설물 내 전등, 스위치, 콘센트 등 전기소모품, 소방기구 등 소모품의 고장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한다

바.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금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시설 내 임대자의 비품은 별도 손해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6. **행위의 금지** : 사용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가. 허가시설 및 위탁관리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양도 행위

나. 허가시설 및 위탁관리 재산의 원상변경 및 추가시설 설치행위

다. 시설내 가스통 반입 등 기타 공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행위

7. 사용허가의 해지 :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공단에서는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사용인은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.

가. 허가시설 및 위탁관리 재산이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할 때

나.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,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

다. 제6항의 규정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

라. 사용허가시설물의 청결상태 불량 등 기타의 사유로 여론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마.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하지 아니 할 경우

바. 공단에서 지시하는 행정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

사. “가”호 이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 및 계약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공단에 귀속됨

8. 재산의 위탁관리 : 사용허가 재산외 일체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9. 기타 유의사항

가. **사용료는 첫해에는 낙찰가로 결정하며 2년차 사용료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재산 변동액을 반영하여 부과(부가가치세 별도)합니다.**

나. 낙찰자는 사용허가신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낙찰금액의 100%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(입찰시 기납부한 입찰보증금 포함)

다. 사용허가 신청(계약) :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.

라. 기타사항

① 사용인은 관련규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, 영업시간은 터미널 운영시간내로 한다.

② 위에 기재한 입찰유의서의 내용은 사용수익허가시 허가조건으로 포함되며,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금번 입찰물건 **상가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3년간**으로 한다.